

# 금강남부권 2차 급수체계조정사업(본구간) 보상계획 공고

전북지방환경청고시 제2024-9호(2024. 5. 8.)로 고시된 ‘금강남부권 2차 급수체계조정사업(본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의신청이 없을 시 열람된 조서의 내용으로 보상대상을 확정합니다.

##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명	사업시행자	사업위치	사업시행기간
금강남부권 2차 급수체계조정사업(본구간)	한국수자원공사 (K-water)	전북 군산시 옥구읍, 부안군 상서면 일원	2020년 ~2025년

## 2.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내역 : 편입조서 및 사업고시문 참고

## 3.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간: 2024. 9. 10. ~2024. 10. 3.(24일간)

나. 장소: 한국수자원공사(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1025, 3층 금강경영처), 063-281-1150

※ K-water 홈페이지(www.kwater.or.kr)에서도 열람 가능

다. 방법: 보상대상 내역 열람 후, 이의가 있을 시 서면(직접 또는 우편) 제출

## 4. 보상계획

가. 보상시기: 2024년 11월 이후 개별통지 예정 (일정상 변동 가능)

나. 보상방법: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 결정

### ※ 감정평가법인 추천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및 시·도지사 와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 추천은 공고 또는 통지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10. 3.)부터 30일 이내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통지) 및 열람 → 이의신청 접수 → 감정평가법인 선정 → 감정평가 →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 협의 → 계약체결 후 보상금 지급

\* 협의 불성립 시 : 수용재결 → 재결보상금 지급 및 공탁

## 5. 기타사항

- 가. 향후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조서내용의 토지 및 물건에 대해 증감 및 제외가 발생할 수 있으며(향후 보상협의를 확정통지), 지장물 중복기재 및 사실관계 확인에 따라 보상대상 물건이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나. 사업인정고시(2024. 5. 8.) 후 행위허가 또는 협의를 하지 않은 건축물, 공작물 등에 대하여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 토지상의 자연림은 토지에 포함하여 일괄 평가 및 보상합니다.
- 라. 토지의 일부가 사업지구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마.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되며, 주소나 거소 불명 및 미등기토지 등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보상기관(한국수자원공사)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기타 자세한 절차 및 현황은 K-water 홈페이지(국민소통-고객지원-보상정보)를 참조하시거나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 보상 담당직원(☎063-281-115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9월 10일

K-water 금강유역본부